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15
----------	-------

발의연월일 : 2025. 7. 24.

발 의 자 : 민병덕 · 서영교 · 김현정
이광희 · 박 정 · 송재봉
복기왕 · 최혁진 · 양부남
윤후덕 · 전용기 · 강득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에게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및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수감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로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불투명성과 이해상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 공시를 사모집합투자기구에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49조의8제1항·제2항, 제249조의14 및 제249조의20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8제1항 중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를 “제83조까지, 제90조제3항·제4항”으로,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241조”를 “제241조”로, “제248조 및 제253조”를 “제25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9조의14제8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3개월”로, “재무제표”를 “재무제표 및 제8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산운용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제90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본다.

제249조의20제1항 중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를 “제241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8제1항 및 제249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다음 회계기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제 241 조

제 253 조

②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
투자기구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1. (생략)

2. 제88조. 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생략)

4.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
지의 규정. 다만, 투자자 전원
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
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생략)

③ ~ ⑨ (생략)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 ⑦ (생략)

⑧ 업무집행사원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
표 등을 사원에게 제공하고 그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삭제>

5.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3개월-----

----재무제표 및 제8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산운
용보고서-----

설명하여야 하며, 그 제공 및
설명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⑨ ~ ⑬ (생략)

<신 설>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186조, 제213조부터 제215조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⑨ ~ ⑬ (현행과 같음)

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에 대하여 제90조제1항·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
사업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본다.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

제241조

제6항·제7항, 제248조, 제249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6까지, 제249조의8, 제249조의9, 제250조, 제251조 및 제253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